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999. 10.13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9년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30일
- 다. 상정일자 : 1999년 9월 16일 (제165회 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유보
1999년 10월 13일 (제166회 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제안이유

-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령이 개정(99.1.18 법률제5634호, 99.5.10 대통령령제16294호) 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 (안 제2조제2항 별표2)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로 하고, 학원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5조)
-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함 (안 제6조)
- 강사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학원 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 (안 제8조제2항)
- 우수학원 지정·육성조항 신설 (안 제10조)
-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조항 신설 (안 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동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개정·정비됨에 따라 부제교습 회수 폐지등 이와 관련된 조례의 일부 내용이 정비되었고,

강사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우수회원 지정·육성 등 입법예고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교육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를 “영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원)”을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반당정원”을 “일시수용능력인원”으로 하며, 제2항의 단서중 “증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설비 및 교구”를 “별표 2의 설비 및 교구중에서 증원되는 인원의 교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및 교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학원의 교습시간 및 부제교습횟수)”를 “(학원의 교습시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05:00부터 22:00까지”를 “05:00부터 23:00까지”로 하며,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항의 “보고”를 “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채용할 때에는”을 “채용한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우수학원의 지정·육성)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

제11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중 “충청북도교육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1]

학원의 시설규모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규 모	
직업기술	시행령 제7조의 2의 제1항 별표 1의 직업기술 분야 계열	시행령 제7조의 2의 제1항 별표1의 직업기술분야 교습과정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국제실무	외 국 어	어학, 통역, 번역	강의실 연면적 90㎡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성인고시	강의실 연면적 90㎡이상	
		행정, 경영, 회계, 통계	강의실 연면적 60㎡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사무관리	부기, 속독, 속셈, 경리	강의실 연면적 60㎡이상	
		속기,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펜글씨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예 능	예 능	응변, 화술	강의실 연면적 60㎡이상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입시·검정	보통교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 계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입시종합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210㎡ 이상, 기타지역 150㎡이상
			입시단과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90㎡ 이상, 기타지역 60㎡이상
			검정고시	강의실 연면적 90㎡이상
독서실	독서실		· 열람실 연면적 : 시지역 120㎡ 이상, 기타지역 60㎡이상	

[비고]

1. 시지역중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에 포함한다.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해당 종류가 포함된다.

[별 표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비 고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1. 기 계	가. 시 설 (1) 설계실 60㎡ 이상 (2) 실습공장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대 이상 (2)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 동 차 (2-1, 자동차 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작업대 10대 이상 (2) 디젤기관 2대 이상 (3) 가솔린기관 5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 동 차 (2-2, 중기운 전)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운전실습장 990㎡ 이상 (3) 기재실 16.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4) 밧데리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기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 동 차 (2-3,중기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정비용, 불가동 분해조정용)1대이상 (2) 엔진체 2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3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블럭,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야전용 유압프레스, 오일작기 각 1대 이상 (5) 중기정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8종 이상 (6) 중기정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7) 작업대 8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 동 차 (2-4,자동차·운전)	가. 시 설 (1) 강의실 66㎡ 이상 (2) 정비장 66㎡ 이상 (3) 주차시설 75㎡ 이상 (4) 기능교육장은 6,600㎡ 이상으로 하되, 제1종 대형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00㎡이상,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 이상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2층으로 기능교육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상하연결 차도의 넓이가 7m 이상이어야함)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나. 설비 및 교구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별표 15)에 서 규정한 기능교습 코스 각 1조 이상 (2) 기능교육장 일시수용인원 1인에 1대 기준으로 기능교육장 면적 300㎡당 차량 1대 이내 (단, 차량은 생산공장에서 출고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작증명서가 구비된 차량이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화공 및 세라믹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2) 기재실 15㎡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전 기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2) 전기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우터 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 송전배전실 (3) 테스트 10대 이상 (4) 트랜스(변압기) 5대 이상 (5) 실험대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 자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2) 기재실 1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재 (가)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3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비 교
					(라) 저주파발전기 2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 1대 이상 (바) 시그올레트시 1대 이상 (사) 정전용량계 1대 이상 (아) 임피던스브릿슈 1대 이상 (자)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조 이상 (2) 텔레비전과정 (가) " (1) "호의 공통기재 (나) 텔레비전,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다)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라) 고전압계 1대 이상 (3) 컴퓨터기기과정 (가) " (1) ",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 (다)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비디오과정 (가) " (1)",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VTR 2대 이상 (다) 비디오카메라 2대 이상 (라) 모니터텔레비전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항 공 (항공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 공 기 (가) 고정익 1대 이상 (나) 회전익 1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2) 엔진 (가) 수평대향형 1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가) Turbo Jet 1대 이상 (나) Turbo Prop 1대 이상 (다)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토목,건축	가. 시 설 (1) 설계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의복·섬유 (8-1,양재· 한복)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2)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3) 전기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4) 재단대 4인당 1대 이상 (5) 전신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의복·섬유 (8-2,수예 자수)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순자수,인형,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아	계	열 교	습	과	시	사	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비	고	
			9. 능	림	(동물)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	비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 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어류, 조류, 갑각류)											
								5점 이상											
								(나) 박제 제작기구 1인당 1조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 처리장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환	경	(냉동, 열관리, 냉·난방)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	비	(1) 대기, 트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4) 보일러 4종 이상(부속장치 포함)											
								(5) 버너 4개 이상											
								(6) 개스분석기 1개 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등 5종 이상											
								(8) 냉동 유니트 1종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교
			(10) 진공펌프, 회전식 압축기 각1대이상 (11) 밀폐형압축기 2대 이상 (12) 증발기, 응축기 2대 이상 (13)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공 예 (11-1,공예·도예)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공 예 (11-2,귀금속가공·보석감정)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보석감정과정 (가) 현미경 10~40배 1인당 1대 (나) 굴절계 1인당 1대 (다) 정밀저울 3인당 1대 (라) 전자저울 3인당 1대 (마) 분광기 2인당 1대 (바) 자외선기 2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종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2) 귀금속세공과정 (가) 산소용접기 2대 이상 (나) 마모기 2대 이상 (다) 팽택기 2대 이상 (라) 전기로 2대 이상 (마) 사출기 5대 이상 (바) 원심주조기 2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사) 흡입주조기 2대 이상 (아) 고무모형 압착 2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안전관리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산업응용 기술	13. 디자인 (13-1,패션디자인)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축소·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VTR 1대 이상 (4) 에어브로취 1Set 이상 (5) 모타 미싱 10대 이상 (6)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7) 스팀아이롱 5대 이상 (8) 인대 5대 이상 (9)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디자인 (13-2,산업디자인)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터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3) 컴퓨터디자인과정 (가) 컴퓨터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나) 스캐너 1대 이상 (다) 칼라프린터 1대 이상 (라) 플로터 1대 이상 (마) VTR 1대 이상 (바) TV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이·미용 (14-1,미용)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대(4인용 이상) 5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마네킹(고정대 포함), 미용의자, 화장대 각 10조 이상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 1종 이상 (4) 대형거울 2개 이상 (5)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이·미용 (14-2,이용)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바리칸, 면도, 가위 각 10대이상 (5)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와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15. 식음료품 (15-1, 조리)	가. 시 설 (1) 조리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250ℓ 이상) 2대 이상 (3) 환풍기 2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10인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식음료품 (15-2, 제과· 제빵)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시청각교구 세트(TV, VTR, 슬라이드) (2) 수직형믹스 중형 2대 이상 (3) 오븐(LPG 또는 전기) 2장 용량 1대 이상 (4) 수평반죽기 중형 2대 이상 (5) 발효실(LPG 또는 전기) 40장 용량 1대 이상 (6) 추저울(5kg) 6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계, 수분추정기 각 1대 이상 (8) 습도계, 온도계 각 4대 이상 (9) 로라(Dough Sheeter) 1대 이상 (10)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11) 앙금믹서(중형) 1대 이상 (12) 썬크대 : 실습실별로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15. 식음료품 (15-3,조주)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인 쇄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및 기타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사 진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2) 암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피아노조율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4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튠링햄머 각 4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포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4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정보처리 기술	19. 통신기기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컴퓨터 2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표준발전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정보통신 (정보처리)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CPU 586 156MHZ급 이상, M/M 16MB 이상, HDD 1.6GB 이상의 컴퓨터 1대 이상 (2) 위 “(1)”호와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된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3) 하드디스크를 갖춘 32Bit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4)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5)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IC류 10대 이상 (6)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대 이상 (7) 출력을 위한 프린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컴퓨터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32Bit 이상의 퍼스널컴퓨터 일시수용 인원 1인당 1대 (2) 프린터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간호보조 기술	22. 간 호 조 무 사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2) 인체모형 1개 이상 (3) 인체해부 및 생리패드 각 1부 이상 (4)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5)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6) 주사기 10종 40개 이상 (7)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8) 혈압계, 청진기 각 20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종 이상 (12) 인공배뇨셀 1종 이상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문화관광	23. 영상·음반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3) 녹음실 및 기재실 2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테이프 등 5종 이상 (6) T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8) 간이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더빙용오디오Set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24. 관 광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 녹음기, 환동기, 카메라 반당 각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경영실무	사무관리			25. 워드프로 세 스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인당 1대 (2) 출력을 위한 프린터가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주 산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예 능	예 능			27. 무용, 전통무용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각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서 예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틀 1인당 1대, 떡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음 악	가. 시 설 (1) 음악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2) 악기과정 (가) 필요한 악기 5대 이상 (3)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피아노 1대 이상 (나) 고대성악: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미 술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베틀,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 모 델, 연 극	가. 시 설 (1) 실기실 6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모델, 연극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32. 바 둑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 꽃기예, 꽃꽂이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패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독서실	34. 독서실	가. 시 설 (1) 열람실 · 사 지역 120㎡ 이상 · 기타지역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 세로 58cm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 표3]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1. 기 계	40	실습실 60㎡기준
		2. 자동차		
		· 자동차정비	40	실습실 60㎡기준
		· 중기운전	30	실습실 990㎡기준
		· 중기정비	30	실습실 45㎡기준
		· 자동차운전	기능교습장 면적및기능 코스규호에 따라 산정	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반: 당해 기능 · 교육장 부지면적 300㎡ 당 1인 이내 나. 대형 및 특수반: 당해 기능코스 1조당 2인 이내 다. 제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반: 당해 기능 교육장 부지면적 50㎡당 1인
		3. 화공및세라믹	40	실습실 45㎡기준
		4. 전 기	40	실습실 45㎡기준
		5. 전 자	40	실습실 45㎡기준
		6. 항 공(항공정비)	30	실습실 60㎡기준
		7. 토목, 건축	20	실습실 45㎡기준
		8. 의복·섬유		
		· 양재·한복	30	실습실 45㎡기준
		· 수예·자수	30	실습실 45㎡기준
9. 농림(동물)	20	실습실 45㎡기준		
10. 환경(냉동, 열관리, 냉난방)	40	실습실 45㎡기준		
11. 공 예				
· 공예·도예	30	실습실 45㎡기준		
· 귀금속가공· 보석감정	30	실습실 45㎡기준		
12. 안전관리	40	실습실 45㎡기준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산업응용기술	13. 디 자 인 · 패션디자인 · 산업디자인	40 30	실습실 45㎡기준 실습실 45㎡기준
		14. 이·미용 · 미 용 · 이 용	20 30	실습실 45㎡기준 실습실 45㎡기준
		15. 식음료품 · 조 리 · 제과·제빵 · 조 주	40 40 40	실습실 45㎡기준 실습실 45㎡기준 실습실 45㎡기준
	정보처리기술	16. 인 쇄	40	실습실 45㎡기준
		17. 사 진	30	실습실 45㎡기준
		18. 피아노조율	30	실습실 45㎡기준
		19. 통신기기	40	실습실 45㎡기준
		20. 정보통신 (정보처리)	30	실습실 45㎡기준
		21. 컴 퓨 터	30	실습실 45㎡기준
	간호보조기술	22. 간호조무사	40	실습실 60㎡기준
	문화관광	23. 영상·음반	30	실습실 45㎡기준
		24. 관 광	40	실습실 45㎡기준
	경영실무	사무관리	25. 워드프로세스	30
26. 주 산			40	실습실 45㎡기준
예 능	예 능	27. 무용, 전통무용	20	실습실 45㎡기준
		28. 서 예	30	실습실 45㎡기준
		29. 음악(피아노)	20(12)	실습실 45㎡기준
		30. 미 술	30	실습실 45㎡기준
		31. 모델 연구	30	실습실 45㎡기준
		32. 바 득	30	실습실 45㎡기준
		33. 꽃기예, 꽃꽂이	30	실습실 45㎡기준

현행	개정(안)	비고
<p>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부제 교습횟수는 반당 1일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시간이내 교습과정 : 12부제이하(단, 자동차운전학원은 14부제 이하) 2. 2시간 이내 교습과정 : 6부제 이하 3. 3시간 이내 교습과정 : 4부제 이하 4. 4시간 이내 교습과정 : 3부제 이하 5. 4시간 초과 교습과정 : 2부제 이하 6. 종합반(입시 및 검정고시의 전 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습하는 과정) : 1부제 다만, 종합반 교습이 끝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시간 범위내에서 위 각호의 부제를 따로 운영할 수 있다. 	<p>② <삭 제></p>	<p>위임근거 법령 폐지(영 제10조 제2항)</p>
<p>제5조(교습소 부제 교습횟수)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부제 교습횟수는 1일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시간 이내 교습 : 8부제 이하 2. 2시간 이내 교습 : 4부제 이하 3. 3시간 이내 교습 : 3부제 이하 4. 3시간 초과 교습 : 2부제 이하 	<p>제5조 <삭 제></p>	<p>위임근거 법령 폐지(영 제16조 제2항)</p>
<p>제6조(교육환경정화 등)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원과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위치가 각각 지상 1층의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20미터 이내인 장소 	<p>제6조 <삭 제></p>	<p>위임근거 법령 폐지(영 제4조 제3항 제2호)</p>

현행	개정(안)	비고
<p>2 <u>학원과 유해업소의 위치가 제1호 이의의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수평거리가 6미터 이내인 수평층과 직근상층 및 직근하층의 장소</u></p>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u>보고</u>)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u>채용할 때에는</u>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u>보고</u>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p>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u>통보</u>) ① - ----- ----- <u>채용한 때</u>에는 ----- ----- <u>통보</u> ----- -----</p> <p>② ----- <u>통보</u> ----- ----- ----- <u>10일 이내</u> ----- <u>통보</u> ----- -----</p>	<p>규제완화</p> <p>규제완화</p>
<p>제8조(수강료등) ①(생략)</p> <p>②<u>통보된 수강료 등은 교습과정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u></p>	<p>제8조(수강료등) ①(현행과 같음)</p> <p>② <u>〈삭 제〉</u></p>	<p>규제완화</p>
<p><u>〈신 설〉</u></p>	<p>제10조(우수학원의 지정·육성) <u>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u></p>	<p>입법예고의견 (충북학원연합회) 수렴</p>
<p><u>〈신 설〉</u></p>	<p>제11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u>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u></p>	<p>입법예고의견 (충북학원연합회) 수렴</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충청북도교육규칙</u>으로 정한다.</p>	<p>제12조(시행규칙) ----- ----- <u>교육규칙</u> ----- -----</p>	

현 령	개 정 (안)	비 고
	<p>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p> <p>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